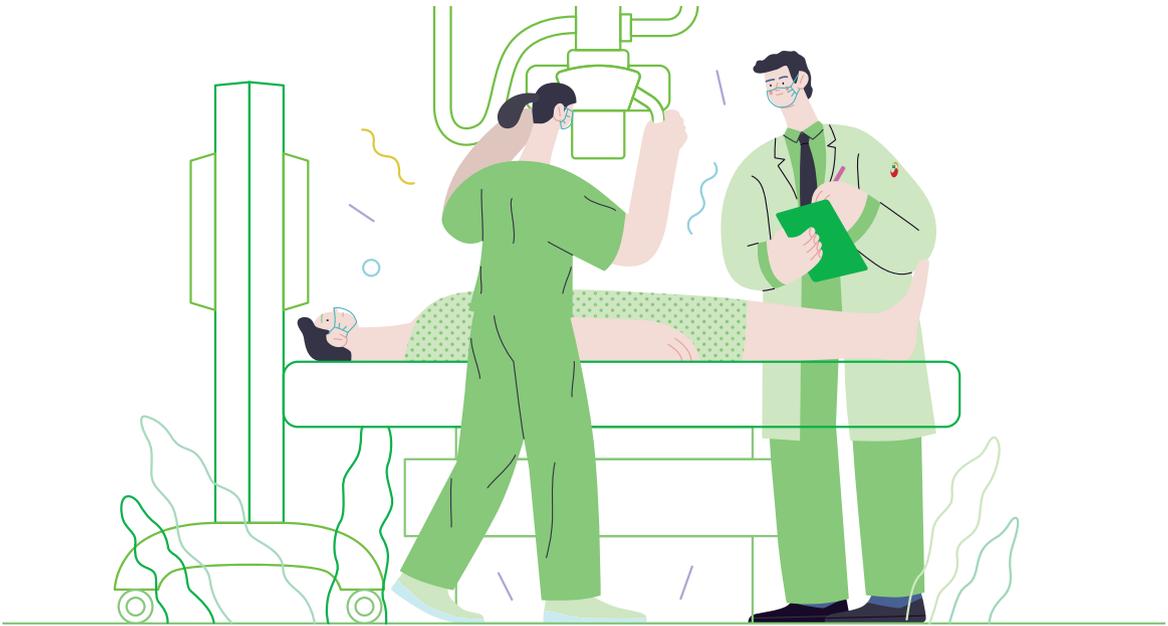


널리 보기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부활이 절실하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부활이 절실하다



이동준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사무국장

1995년 사실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없어지다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정기건강진단이 시행될 수 있었다.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 전문화 및 특성화되었다.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실시되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예방사업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이전까지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경영계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검사 항목도 유사하고 제3자 지불방식의 장점을 들어 노동계 및 검진기관에서도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들도 큰 범위에서 국민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건강검진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1998년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건강진단결과 보고 시 일반건강진단의 결과 보고 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법(死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하에서 실시되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예방사업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다.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변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2018년 기준으로 1,500만 명이며 이중 56%인 840만 명이 근로자들이다. 즉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나 주기변동시 근로자들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 1〉 2018년도 국가일반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명)

구 분		대상자	수검자	%
계	합계	19,593,149	15,076,899	
	남자	10,393,820	8,106,914	
	여자	9,199,329	6,969,985	
지	역	4,707,977	2,932,140	19
직	장	13,342,353	10,862,410	
	근로자	9,880,675	8,410,920	56
	피부양자	3,461,678	2,451,490	16
공	교	1,542,819	1,282,349	9

출처 :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가검진의 항목, 판정기준, 주기 및 사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개선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특성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례로 2차검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과정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자에 대하여서는 현재 2차검진에 해당하는 확진검사를 외래진료를 통하여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형태와 전혀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콜레스테롤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으로의 환원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에 있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중요성은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할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야간근로, 과로사, 직무스트레스 등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부분이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의 검사주기 변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 것은 2015년에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인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연구」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어디에도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연구자들 중에도 직업환경 전문가들은 없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주기를 결정하는 과정도 현장 근로자들인 경우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 2년의 주기를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즉 근로자의 특수성에 대한 비용-편익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려되지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콜레스테롤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으로의
환원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핵심내용이 전적으로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서는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병원에서 본인 부담 없이 혈압측정 및 혈당검사를 각각 1회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수검자와 검진기관은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1차검진 결과(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가지고 필요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순환기계질환(고혈압)의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에는 혈압, 정밀안전검사, 심전도,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변화가 부른 결론

1995년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한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을 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는 근로자 일반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